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 자 윤

편 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
전 화 75-7834

인 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 화 75-5444

제 615 호
1977. 7. 26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177 호 : 서울특별시유로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
개정조례 3

◎ 고 시

제 23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4

제 239 호 : 도시계획시설 (수도) 결정및지적승인 4

제 241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5

제 242 호 : 도시계획시설 (녹지) 지적승인 5

제 243 호 : 도시계획시설 (유통업시설비및화물자동차정류장)
변경및결정과 지적승인 6

제 244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폐지결정및지적승인 6

제 245 호 :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지적승인 7

제 246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8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869

제 247 호 : 도시계획시설 (광장) 지적승인	8
제 24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가 각진재) 지적승인	9

◎ 공 고

제 170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자지정승인	9
제 171 호 : 도시계획사업 (수도) 시행 자지정승인	10
제 172 호 : 도시계획 시설 (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	10
제 173 호 : KS표시정지처분공고	12
제 174 호 :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지정공고	13
제 176 호 : 식료보호병의원지정및취소	13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로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춘 ㉔

1977년 7월 26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177 호

서울특별시유로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유로도로 통행요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은 별제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 유선도로노선명, 징수구간및기간

노 선 별	징 수 구 간	징 수 기 간
남산 1 호터널	자 : 중구예장동산 5 의 6 지 : 용산구한남동산 10 의 1	자 1970.8- 지 94.12
남산 2 호터널	자 : 중구장충동민족문화센터 지 : 용산구이태원동군인아파트	자 1971.1- 지 90.8
복 약 터 널	자 : 중로구평창동산 6 의 1 지 : 성북구정능동산 37 의 1	자 1971.7- 지 94.12
강 변 3 호 (용 비 교)	자 : 성동구금호 4 가동 2 의 1 지 : 성동구성수 1 가동 693	자 1971.1- 지 77.12
남부순환도로	자 : 영등포구독산동산 32 지 : 영등포구신월동 16	자 1977.8- 지 1997.12
남산 3 호터널	자 : 중구회현동 49 지 : 용산구용산동 2 가 5	자 1978.1- 지 1996.12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38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변경
결정 및 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
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결정 및
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

가.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로	2	50	30 ^m	3,120 ^m	왕십리광장	압구정동	응봉동고개부근 210
변경	"	"	50	30	3,120	"	"	구간폭원 축소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39 호

도시계획시설 (수도) 결정 및 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수도)
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 하
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의
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1호 (77.3.16)
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이를
고시한다.

가. 수도용지결정 및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신 설	수 도	강남구청담동산 5-1외 7 공유지번	5,902	

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
제 41호 (77.3.16)의 권한 위
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
과와 관할구청도시정비과 및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
다.

1977. 7.21

서울특별시장

※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
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
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
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7. 7.21

서울특별시장

※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41 호
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 1. 동대문구청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 권한위
 가. 지적승인내역

입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.
 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 1977.7. .
 서울특별시장

구분	등급	류별	목원	연장	기 점		총 점
신설	소로	1	10	230	담십리동	485	담십리동 483
	소로	2	8	50	담십리동	484	담십리동 322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42 호
 도시계획시설(녹지)지적승인
 1. 건설부 고시 제 137 호('77.7.9)로 일부 신설 결정된 시설(녹지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('77.3.16)에 의거 고시한다.
 가. 도시계획 시설(녹지) 지적승인 조서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 1977.7.23
 서울특별시장

지구명	위 치	면적(공)	비 고
원효녹지	농산구 원효로1가1의 45,55	3,067	
산천녹지	신천 도화동	5,250	

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3 호

도시계획시설 (유용업무설비 및 화물자동차정류장) 변경 및 결정과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유용업무설비 및 화물자동차정류장) 변경 및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겠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

1977.7.23

서울특별시

○ 시설 변경 및 결정과 지적승인 조서

(1977.3.16)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기정	화물자동차정류장 (동부)	동대문구 상봉동 79-7일대	8,853.9	폐지
변경 신설	유용업무설비 (동부)	동대문구 면목동 1049일대	약 21,950	

*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4 호

도시계획시설 (시장) 폐지 결정 및 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시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(폐지) 하겠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 (1977.3.16)의

1977.7.25

서울특별시

가. 시장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(폐지) 조서

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기정	시 장	성동구 응곡동 94-7외 5필	1,199.2평	폐 지
변경	"	"	"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5 호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 지적승인</p> <p>1. 건설부 고시 제 184 호 (75.11.13) 로 구역 지정된 삼청제 1 구역 등 15개 구역의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</p>	<p>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7. 7.25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
--	---

지 적 승 인 조 서

구역 명 칭	위 치	면 적 (㎡)
삼청 1 구역	종로구 삼청동 산 2-20 번지 일대	7,415 ㎡
삼청 2 구역	종로구 삼청동 산 2-10 번지 일대	23,752 ㎡
가락 2 구역	성동구 가락동 산 60-3 번지 일대	9,917 ㎡
거여 4 구역	성동구 거여동 255 번지 일대	8,360 ㎡
미아 2 구역	도봉구 미아동 860 번지 일대	7,107 ㎡
미아 3 구역	도봉구 미아동 887 번지 일대	8,264 ㎡
미아 5 구역	도봉구 미아동 1261, 1266, 산 100-1 번지 일대	399,046 ㎡
미아 6 구역	도봉구 미아동 791 번지 일대	81,483 ㎡
미아 7 구역	도봉구 미아동 791 번지 일대	22,678 ㎡
쌍문 1 구역	도봉구 쌍문동 414 번지 일대	119,438 ㎡
쌍문 2 구역	도봉구 쌍문동 368-1 번지 일대	11,900 ㎡
월계 구역	도봉구 월계동 23 번지 일대	72,734 ㎡
충정 2 구역	서대문구 충정로 3 가 3 번지 일대	8,264 ㎡
남가좌 5 구역	서대문구 남가좌동 79 번지 일대	8,872 ㎡
북아현 5 구역	서대문구 북아현 2 동 236 번지 일대	4,740 ㎡
계	15개 구역	794,150 ㎡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6 호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37 호 ('77.7.9) 로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의한 위임 사항에 따라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26
서울특별시 장

○ 도로지적승인조서

등급	번호	폭 원	연 장	기	취	종	점
광로	41	40m이상	710 m	서대문로타리 (광장31)	충정로3가 (대 2 - 4)		
"	42	50 m이상	450 m	충정로3가 (광로 41)	경기공전앞 (광로 43)		
"	43	40 m이상	1,520 m	경기공전앞 (광로 42)	공덕동로타리 (광로 27)		

※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7 호
도시계획시설 (광장)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37 호 ('77.7.9) 로 신설 및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관내도시계획시설 (광장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의한 위임 사항에 따라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26
서울특별시 장

○ 광장지적승인조서

번호	광 장 명	위	치	면 적 (㎡)	비 고
51	신 월 광 장	영등포구	신월동	72,063	
39	행 당 광 장	행당동	20일대	23,140	

※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248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가각진제)
지 적 승 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가각진제) 을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에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조 (77.3.16)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 18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 (도로가각진제)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특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변경	중로	2		15	160	갈월동4-22	갈월동파출소	갈월동쌍굴다리 가각정비 (진파로측)
						동자동43-108	"	15X10X11
						동자동 43-109	"	10X10X18

공 고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170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자지정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2 호 (76.10.29) 로 시설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3조 제 5항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(77.3.16)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자 승인되었기 이를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7. 7. 21

서울특별시장

가. 시행허가내용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시 행 자
신설	서울특별시 (신자양) 국민학교	성동구자양동 506의 12 필지	4,400 평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				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71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수도) 시행자지정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 호 (77. 7. 7) 로 시설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수도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3 조 제 5 항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</p>		<p>(77. 3. 16)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수도) 시행자 승인되었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7. 7. 21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		
가. 시행허가내용				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시 행 자
신설	수도	성동구광장동 산 12	906 평	워커힐 대표 신광균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				
<p>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72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</p> <p>1. 서울시고시 제 239 호 (77. 7. 21) 로 고시된 청담동 배수지 시설에</p>		<p>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</p>		

2. 관계도서는 서울시 수도권 시설과 및 강남구 수도 2과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1977. 7. 23
서울특별시

3. 사업의 규모: 용수정 2,400톤 펌프장 1식
4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: 77. 8. ~ 78. 12. 31
6. 수용할 토지: 별첨 토지조서
7.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

<공 발 개 요>

- 1. 사업시행의 위치: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, 삼성동
- 2. 사업의 종류와 명칭: 배수지 시설공사

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70 ~ 27
성명: 청화기업주식회사
대표 서강희

수 용 할 토 지 조 서

지명	지번	토지		환지예정지			(수용) 시설권정	소유자 주소	성명
		지목	면적	지번	면적	면적(평)	면적(평)		
삼성동	143-4	대	50	168	13,785.30	13,714.30	1.684	서울특별시	청화기업주
"	147	"	30	"				시 중구	식회사
"	145-8	"	105	"				예관동	대표 서강희
청담산	5-1	입	9,780	"				70~27	
삼성산	3-1	"	1,913	"					
"	산 7	"	2,100	"					
"	134-3	건	163	"					
청담산	4	입	7,980	"			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3호

K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운영요강 제 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. 허가번호 : 1255
2. 허가일자 : 1976. 1.17
3. 제조업체명 : 주식회사 오리표
 썩크
4. 대표자 : 박유재
5. 소재지 : 영등포구 신정동 308-1
6. 규격번호 : KSG 5700
7. 품 명 : 가정용 취사용구 (물벼
 림대윗판 700 X 550)
8. 처분기간 : 처분일로부터 1개월
 이후 당시의 해제조치가 있을때
 까지
9. 표시정지사유 : KS 규격기준미달
10. 기준미달사항 : 누 수

1977. 7.25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74호

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공고제 159호(77.7.11)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조에 따라 환지에 정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2. 환지에 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3. 조서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것이나, 미수령 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.

1977. 7.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명 : 신림, 신림추가, 화양추가
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
- 2) 변경내역 :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
 일부토지
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일부토지
 " 영등포구화곡동 "
- 3) 필지수 : 48 필
- 4) 변경도서및도면 : 서울특별시도시정
 비국구획정리과및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176 호</p> <p>의료보호병의원지정및취소</p> <p>생활보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</p> <p>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할 의</p>		<p>료기관을 조정 지정하고 일부 의료</p> <p>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였기</p> <p>다음과 같이 공고함.</p> <p>1977. 7. 26</p> <p>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</p>	
<p>< 다 음 ></p>			
<p>1. 의료기관지정 및 진료대상지역 변경</p>			
<p>가. 제1차 진료</p>			
진 로 지구명	진 로 대 상 지 역	1 차 진 료	
		의료기관명칭	소 재 지
서 울 특별시	종로구 : 교남동, 무악동	새서울 의원	종로구무악동 46 의 1422
	성동구 : 전지역 (하왕십리제 1동 의 26개동의 이비인후과 환 자	김이비인후과 의 원	금호동 3 가 369 의 1
	서대문구 : 전지역 (충정로동의 36개동, 운명출장소관내포 합) 의 신경정신과 환자	한 화 의 원	갈산동 527 의 11
	영등포구 : 신길 1, 2, 3, 4, 5, 6동	제 생 의 원	신길동 450 의 1
	관악구 : 전지역 (노량진제 1 동 의 30개동) 의 이비인후과 환자	김이비인후과 의 원	봉천동 33 의 4

나. 제 2 차진료			
진 로 지구명	진 로 대 상 지 역	2 차 진 료	
		외포기관명칭	소 재 지
서 울 특별시	종로구전지역 (청운동의 25 개 동)	시립동부병원 이대부속병원	용무동 12 의 1 종로 6 가 72
	중구전지역 (태평로 1 가동의 21 개동)	시립동부병원 중대부속성심 병 원	필동 2 가 82 의 1
	성동구 전지역 (하왕십리 제 1 동의 31 개동)	시립강남병원 한양대 부 속 병 원	삼성동 63 행당동산 8 의 2
	도봉구전지역 (미아제 1 동의 23 개동)	시립동부병원 고대부속병원	명륜동 2 가 4
	서대문구전지역 (충정로동의 36 개동 2명 출장소관내포함)	시립영등포병원 연 세 대 부 속 세 브란스병원 서울적십자병원	영등포동 2 가 222 신촌동 15 평동 163
	마포구전지역 (아현제 1 동의 19 개동)	시립영등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순 천 향 병 원	한남동 757 의 58
	용산구전지역 (후암동의 20 개 동)	시립영등포병원 순 천 향 병 원 국립서울병원	한강로 3 가 56

진 로 지구명	진 로 대 상 지 역	2 차 진 로	
		의 료 기 관 명 칭	소 제 지
서 울 특별시	강남구전지역 (양재동의 12 개 동)	시립강남병원 순천향병원	
	천호출장소전지역 (명일동의 10 개 동)	시립강남병원 한양대부속병원	
2. 의료보호병·의원자정취소			
의 료 기 관 명 칭	소 제 지	개 설 자	비 고
서 울 의 원	현저동 46 의 1422	려 원 응	제 1 차 진 로 기 관
공 덕 의 원	용두동 233 의 21	임 세 옥	·
성심이비인후과의원	금호동 3 가 9 - 1	여 영 구	·
문 화 의 원	갈현동 527 의 11	신 배 송	·
대 신 의 원	신길동 163 의 21	김 상 대	·
장이비인후과의원	노량진동 310 의 160	장 주 형	·
시 립 중 부 병 원	종로구육신동 46	서울특별시장	제 2 차 진 로 기 관 (폐 원)
시 립 남 부 병 원	용산구원효로 1 가 12	·	(폐 원)